

이사회 규정

주식회사 GS리테일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GS리테일 이사회(이하 ‘이사회’ 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본 규정 제10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3조의2 (사외이사의 권한)

본 회사의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,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(삭제)(2020.08.13)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년4회 개최하며, 매분기 종료 후 90日 이내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日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이사회에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1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(7) 주식의 소각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현금.주식.현물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
(1)-2 ESG 업무 추진 방침에 대한 사항

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
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
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(5)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선임 및 해임

(6)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결정

(6)-1(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) 각 대표이사 분담할 업무에 대한 사항

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
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

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

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
(10)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대한 사항

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
(12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
(13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
(14) 간이 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 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

(15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모집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
5. 기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4.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및 검토에 관한 사항
5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
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4조 (집행임원)

- ①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.

제15조 (경영회의)

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집행 임원들로 구성된 경영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- 부 칙 -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1999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02년 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04년 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05년 2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17년 8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1년 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5년 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○ 이사회 협조 사항

상법, 정관,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은 아니지만,
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, 사업자등록, 인허가 취득 등을
위하여 이사회 결의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책임하에
이사회 결의서를 작성. 제출한 후 차기이사회에서 보고토록 함.

○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이사회 상정 기준

- 제10조(부의사항) 제3항(재무에 관한 사항) 관련

구 분	유 형	상 정 기 준	비 고
1) 중요한 대규모투자	· 신규 및 증설 시설투자	· 건당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5% 이상	
2) 출 자	· 자회사 설립	· 전부 상정	
	· 기 타	· 건당 출자 금액이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2.5% 이상	
3) 자산의 처분	· 주식 매각 · 유형고정자산의 매각 · 영업의 일부 양도	·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2.5% 이상	
4) 자금의 차입	· 일반 차입 · 담보 제공	·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5% 이상 또는 장기차입(1년 초과) 시	
5)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(자회사 및 기타회사)	· 차입 관련, 기 타	·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2.5% 이상	
6) 계열사 간 내부거래	·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 자금 ·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 ·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 등 자산 (부동산 임대차 포함)	· 건당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% 이상 또는 100억 원 중 적은 금액 (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또는 간주부가세적용이율) (※상품 또는 용역 거래의 경우, 분기별 100억 원 이상 거래 시)	